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 양식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6.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강원특별자치도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계획수립범위 및 규모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 면적 : 100,758.00㎡
- 계획수립권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승 인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2.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방법,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등

3.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3. 12. 26. ~ 2024. 01. 09.(14일간)
- 공개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4.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으로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https://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033-249-45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3. 12

강원특별자치도

목 차

제 1 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
1.1 계획의 목적	2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2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3
1.4 계획의 내용	3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설정	11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12
2.2 평가항목 및 범위의 설정	12
2.3 환경영향 예측기법 및 관련 자료	16
제 3 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18
3.1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19
3.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요	22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 반영계획	24

제 1 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목적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1.4 계획의 내용

제 1 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며,
- 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지정된 동 지역에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녹지지역→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동 지역을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의 “2. 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되며, 면적이 100,758.00㎡로 1만 제곱미터(녹지지역) 이상 포함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2. 개발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시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비고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2]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23. 03. 31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변경)(강원도고시 제 2023-102호)
- 2023. 07. 17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 11. 13 ~ 12. 1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3. 12. 27 ~ 2024. 01. 10 : 평가항목·방법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4. 01. ~ 2024.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4 계획의 내용

가. 일반개요

- 계획명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 면적 : 100,758.00㎡
- 계획시행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승인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나. 춘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표 1.4-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5	공공청사	강원특별자치도청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100,758	-	100,758	2023.03.31 강원도고시 제2023-102호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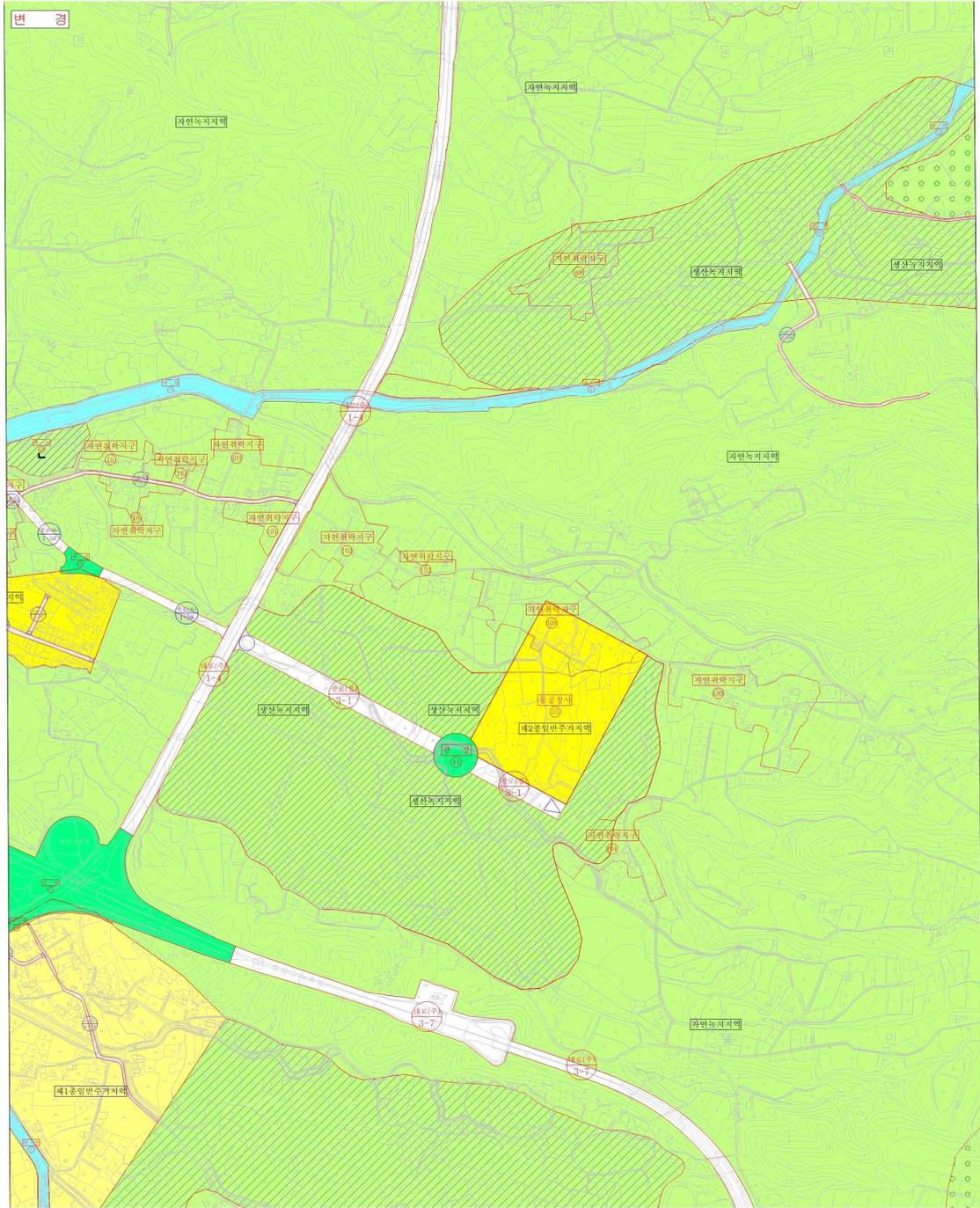
<표 1.4-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35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8,840	2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35	춘천시 동내면	생산	제2종일반	71,918	250%	■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축

	고은리 373번지 일 원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하	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	------	--	----	--------------

(그림 1.4-1)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도(기정)

(그림 계속)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도(변경)



다.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본 계획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1.4-3>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100,758.00	100.0	-
건축	17,920.00	17.8	-
녹지	50,634.00	50.2	-
조경	4,630.00	4.6	-
광장	46,004.00	45.6	-
주차장	4,308.00	4.3	-
인도	12,566.00	12.5	-
도로	15,330.00	15.2	-

(2) 건축계획

- 본 계획에서의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1.4-4> 건축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위치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대지면적(m ²)	100,758.00m ²	-	
건축면적(m ²)	17,920.00m ²	-	
건축연면적(m ²)	121,007.90m ² (지상 71,007.90m ² , 지하층 55,000.00m ²)	지상층	직무 및 부속공간, 법적의무설치공간 등
		지하층	지하주차장, 충무시설, 설비관계공간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본청	지상 7층
		의회	지상 5층
		복리후생동/ 보육시설동	지상4층
건폐율/용적율	17.8% / 70.5%	(법정기준)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주차대수	1,750면(지상 400면, 지하 1,350면)	법정 주차대수의 220%	



	건축부지
	조경녹지
	광장녹지
	주차장
	인도
	도로
	도로 위 2층 건물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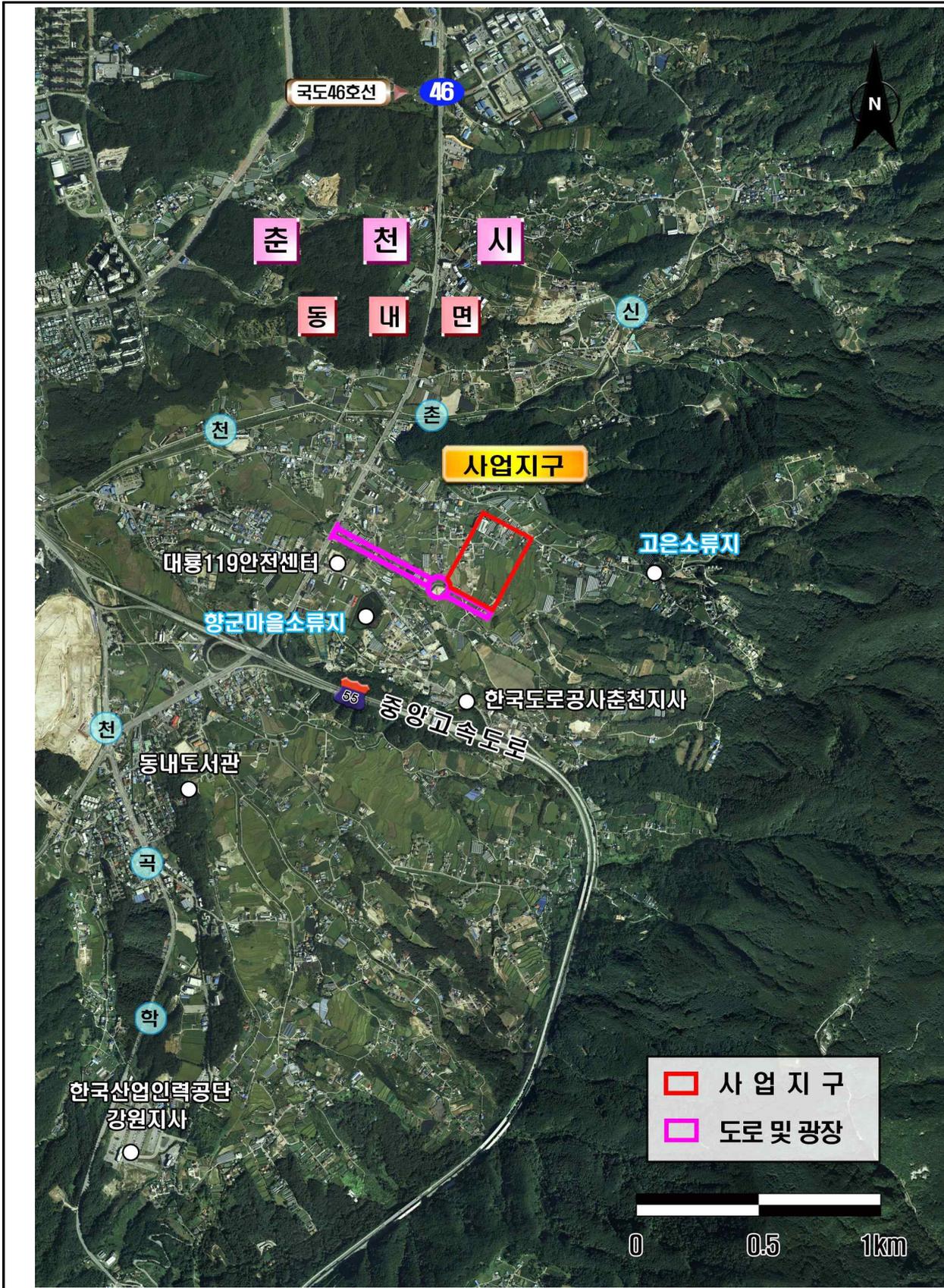
(그림 1.4-1)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1.4-2) 건축배치 계획도



(그림 1.4-3) 사업지구 위치도



(그림 1.4-4) 사업지구 위성사진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2 평가항목 및 범위의 설정

2.3 환경영향 예측기법 및 관련 자
료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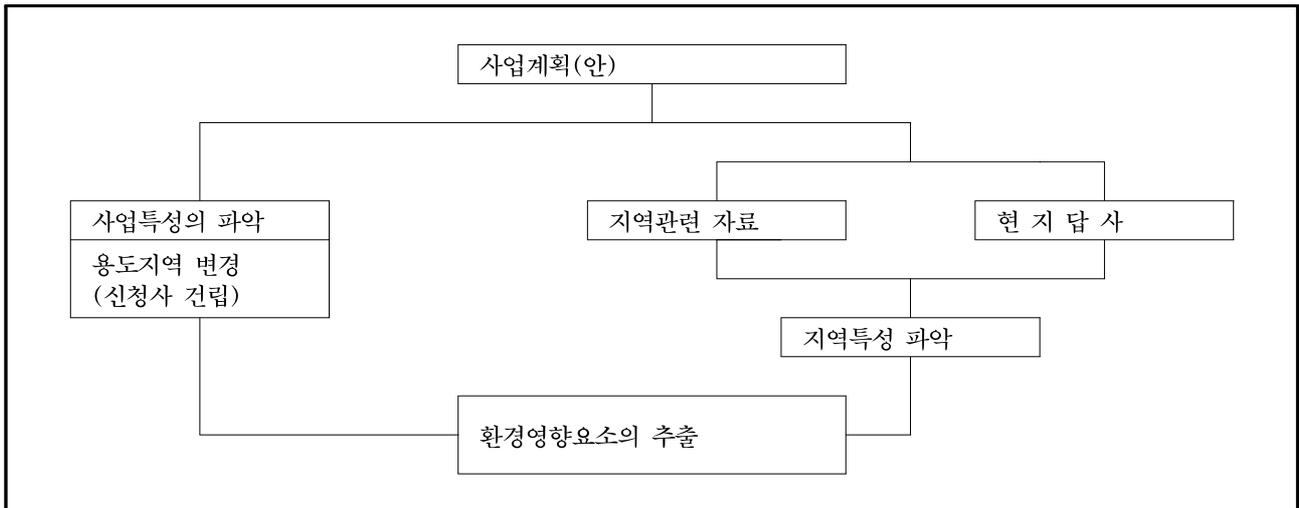
- 공간적 범위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 면적 : 100,758.00m²
- 시간적 범위 : 2022~2026년

2.2 평가항목 및 범위의 설정

2.2.1 평가항목의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요소」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주된 원인을 말함.
- 본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 수립 후 신청사 건립으로 공사 및 운영 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음.



(그림 2.2-1) 환경영향요소 추출 절차도

<표 2.2-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구분	환경영향요소	구분	환경영향요소
공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깎기 및 쌓기 ■ 건설기계 및 공사인부의 투입 ■ 토지편입 및 지장물 발생 	운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변화 ■ 근무직원 및 민원인(방문객) 발생 ■ 이용차량 발생

나. 평가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심의결과, 계획의 특성 및 지역특성, 환경영향요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2-2>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설정사유 / 제외사유	비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이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이 일괄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본 계획 수립을 위해 설정·분석된 대안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에 따른 식물상 변화 및 식생 훼손, 동물의 활동영역 감소 및 이동로 단절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절·성토 계획에 따른 토양이동 및 자연지형의 변화, 비탈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절·성토에 따른 자연지형의 변화, 건축물 입지로 인해 자연경관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나지화된 지역에서 강우에 의해 토사유출,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된 오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 수질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운영시 근무인원 및 방문객으로 인한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임지의 타당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건설기계 가동 및 이동으로 인해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운영시 건축물 냉난방 및 가동 및 이용차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토양	■ 공사 시 건설기계 연료 교체 시 발생된 폐유가 유출될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건설기계 가동으로 주변 지역에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된다. ■ 운영 시 이용차량에 의해 교통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된다. ■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가 발생되므로 효율적 에너지 사용계획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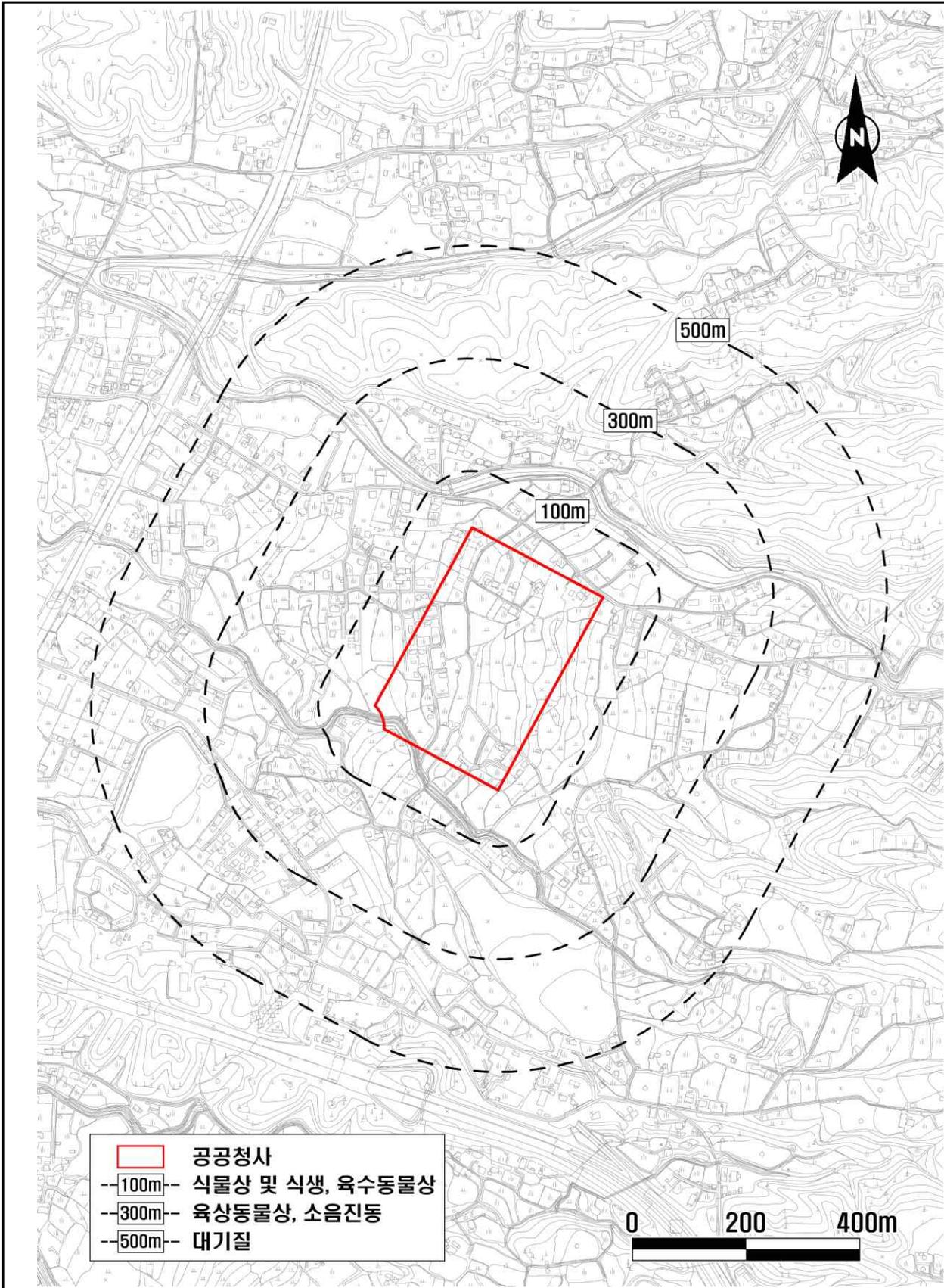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됨. ■ 토지 편입 및 지장물 발생 등 사유재산의 침해가 발생됨. 	-

2.2.2 평가범위의 설정

- 평가범위는 계획시행 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의 특성, 주변지역의 지역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2.2-3> 평가범위의 설정

평가항목	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비고
1. 계획의 적정성	-	-	-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지구 및 관련 행정구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수립지역	-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 대안 설정지역	-
2. 입지의 타당성	-	-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	-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식생 및 식물상, 육수동물상 100m 이내, 육상동물상 300m 이내)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영향 및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지구 내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비탈면 발생 예상되는 지역	-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4) 수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수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1) 환경기준의 부합성	■ 대기질 : 반경 500m 이내 ■ 토양 : 계획지구 내 ■ 소음진동 : 반경 300m 이내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춘천시 및 계획지구	■ 계획 시행으로 폐기물, 하수 등 환경기초설 연계처리가 가능한 지역	-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지구	■ 계획 시행으로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지구 내	■ 계획시행으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그림 2.2-1) 주요 평가항목의 범위 설정도

2.3 환경영향 예측기법 및 관련 자료

- 본 계획 시행 시 입지의 타당성에 따른 환경영향의 예측·분석 시 주요 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서 사용할 기법 및 내용, 관련자료 등은 다음과 같음.

<표 2.2-3> 평가범위의 설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예측기법	관련자료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계획 검토	■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 등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분석	■ 사업계획서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문헌 및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사업지구의 동· 식물상 분포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현존식생 및 식생보전등급을 산정하고, 사업시행으로 식생 훼손 및 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설계자료를 분석을 통해 절성도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량 이동, 비탈면 발생 규모를 예측	■ 사업계획서 ■ 실시설계 자료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현장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파악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망점별 경관변화 분석	■ 개발사업 등에 관한 자연경관심의지침, (환경부예규 제726호)
		수환경의 보전	■ 공사 시 원단위 적용을 통한 우수 및 토사유출량을 정량적으로 예측, 운영 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우수발생량 원단위를 이용하여 우수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예측	■ 상수도 통계, 환경부 ■ 하수도 통계, 환경부 ■ 하천설계기준· 해설, 2009, 한국수자원학회 ■ 사방시설 설계기준, 전강현, 1984, 일본골프사업연감 ■ 건축물의 용도별 우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

<표 2.2-3> 평가범위의 설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예측기법	관련자료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 시 오염물질 발생원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후 대기질 예측모델(AER Model)을 이용하여 주변 지역의 농도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표준품셈, (주)건설연구사 ■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환경영향의 합리적인 예측평가를 위한 기법연구,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V), 2023,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유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별로 발생하는 폐유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표준품셈, (주)건설연구사 ■ 환경영향의 합리적인 예측평가를 위한 기법연구,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합성소음도 및 합성진동도 산출공식, 점음원 거리감쇠공식을 이용하여 건설기계류 가동에 의한 소음도 및 진동도를 정량적으로 예측 ■ 운영 시 예측교통량을 토대로 간선도로변 도로교통소음 예측식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류 소음·진동 특성, 2005, 한국소음진동공학회 ■ 도로교통소음(1), 1999,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춘천시 해당 부서와 연계처리 가능여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통계, 환경부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위를 이용하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정량적으로 예측 ■ 온실가스 배출계수 등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 환경영향의 합리적인 예측평가를 위한 기법연구, 20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 지침('15.12.9.)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변화를 예측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따라 생태면적율을 정량적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16.7, 환경부)

제 3 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3.1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3.2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제 3 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3.1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계획

- 본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3.1.1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는 초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발생하는 일간신문 1개지 및 개발기본계획 수립지역(강원도, 춘천시)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도 공고할 것임.

3.1.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본 계획지구가 속한 춘천시 정보통신망(홈페이지)에 평가서 초안의 요약문을 게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추후 해당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20일 이상 40일 이내 기간 동안 비치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임.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게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3.1.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실시토록 하며,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임.
-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시 함께 공고토록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여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표 3.1-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계획

구 분	관련법령	실시내용
초안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신문, 지역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 ■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
공람게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3.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관할 행정기관(춘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게시할 계획임.

<표 3.2-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관련 법

구 분	관련법령	실시내용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요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 반영계획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요

4.1.1 추진경위

- 2023. 11. 13 ~ 2023. 12. 19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서면 실시)
- 2023. 12. 27 ~ 2024. 01.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 공개

4.1.2 주요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 평가항목 및 범위

4.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인으로 구성하였음.

<표 4.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분	소속	직위	위원명	비고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청	청사건립추진단장	안OO	-
위원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정OO	-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평가본부	연구위원	이OO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과	과장	이OO	-
	춘천시 환경정책과	과장	한OO	-
	동명기술공단 환경부	전무	최OO	-
	고은리(주민)	비상대책위원장	박OO	-
	춘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OO	-

<첨부 4.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요청 공문

저장 : 김소라 / 청사건립추진단 (2023-11-10 13:30:45)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알림 및 심의요청

- 도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음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하오니 [붙임2] 서식에 의거 2023. 12. 1.(금)까지 심의의견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요

- 가. 심의기간 : 2023. 11. 13.(월) ~ 12. 1.(금)
- 나. 심의위원 : 8명
- 다.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라. 심의안건 : 1건(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의견서(서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심의자료)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수신자 자연생태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 춘천시장(환경정책과장), 한국환경연구원장,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동명기술공단(환경부), 고은리주민비상대책위원장

주무관 김소라 기반시설팀장 이병진 청사건립추진 전결 2023. 11. 10.
단장 인영미

협조자

시행 청사건립추진단-2540 접수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봉의동) / <https://state.gwd.go.kr>

전화번호 033-249-4519 팩스번호 033-249-4145 / sora2503@korea.kr / 비공개(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문서관리카드청사건립추진단-2540 1/1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의견 반영계획

4.2.1 심의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따른 심의의견은 다음과 같음.

<p>[별지 제1호서식 : 제3호 제3항 관련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 등의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6.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3. 11. .</p> <p style="text-align: right;">(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위원장 </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 입지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검토 자료를 충실히 작성·제시하여야 함. ○ 동 계획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조성계획 수립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 등에 따라 작성 ○ 사업시행 시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현행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예측·평가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등 검토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인근의 타 개발계획 수립 여부를 파악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누적 환경영향 여부를 검토·예측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부지 및 주변의 지형, 수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범위의 설정 근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부지 주변의 운영 및 개발(예정) 사업 등을 포함한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항목별 누적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제시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참고 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계획의 성,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안OO 위원장	정OO 위원
<p>□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전지역과 보전축 등의 환경보전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상충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감 및 대안을 고려하여 최적안 선정 - 생태자연도 등 자연생태, 산지경사, 보전산지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구 내 양호한 식생(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이상)과 자연지형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 유지 위한 생태축(농산축, 소농산축, 산간계류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지구 경계지역은 인접한 지역의 자연생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보전녹지의 충분한 확보 방안 마련 및 보전녹지와 기타 조경녹지를 병행해 구분 - 계획지구와 인접한 도로, 경관시설 및 하천 등에서의 경관영향, 생활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 방안 강구 <p>□ 사업에 대한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은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등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 및 방법을 설정, 문헌 및 현지조사 범위를 구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의 중생 활동·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동·식물분야의 면밀한 조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보전방안을 검토·제시 - 사업부지 내·외 환경민감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배후대간보호지역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구 지형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16.7, 환경부), 에 따라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 생태면적률 산정·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 하천수질보전(국가·지방하천 등),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제시 - 현재 용수확보 현황을 반영하여 지하수 등 추가 수원을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향 조사를 별도 항목으로 지정하여 적정 용수공급 방안(지하수 대체용수 확보 등)을 수립·제시 - 대기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필요 - 사업지구 인근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제시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 검토와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대책(친환경적 에너지 사용 등) 수립·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기준(15.12.9.)」 참고 - 과도한 지형 훼손, 주요 조망경로부터의 경관 훼손여부 검토 및 이에 따른 보전방안을 강구·제시 - 인공건축물 및 조성녹지 등이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예규 제26호, '23.4.10.)」 적용 ○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저감방안 강구 전·후를 비교하여 제시하되,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할 경우,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식생 등 생육이 양호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사업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최대 10년전) 활용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시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 시 도표, 인포그래픽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이 적은 일반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방,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p>6.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과정에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평가 항목, 범위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를 통해 재차 검토·검토하여야 함.</p>
정OO 위원	정OO 위원

2023. 11.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위원 회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행되는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으로 계획 수립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의 상정성, 효용성 등을 고려하되, 친환경적 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대한 수립 시에는 다양한 토지이용계획(대안) 수립을 통해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함.
3. 대안
 - 대안 수립 시 기존 입지 비교 자료가 있을 경우 입지 비교 대안 추가 시행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적정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적정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없음

2023. 11.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위원 회 (인)

정OO 위원

이OO 위원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 의견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 용도지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계획지구 및 주변에 대한 자연생태,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의 설정·분석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의 선정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계획 수립 시 주차장, 시설지 등에 저영향개발기법(투수성 포장 등) 확대 등 생태면적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본 대상구역 경계로부터 북측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생태자연도 1등급 이면서 식생보전등급 2등급이 수나무군락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 식물상·식생에 대한 현지조사 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대하여 조사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현지조사 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환경현황 조사방법을 따라 실시하여야 함.

○ 부지 조성 등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 부지 및 인근의 경온시설에 대하여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민원 발생 여부를 점검검토 대상으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이 초안 공람 및 설명회(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이 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6. 기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전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첨부하여 춘천시 환경정책과로 지역개발부하량 할당협의 요청(문서)을 하여야 함.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의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승인) 이후에 사업추진 가능

2023. 12.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위원 회 (인)

한OO 위원

한OO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 심의결과 통보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의견없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의견수렴절차 생략 무방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의견없음

2023. 11. 14.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위원 박은



박OO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 심의결과 통보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총괄 의견

○ 도청사 신축부지가 당초에 결정되었던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433번지 일원에서 373번지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가 국도우회도로 추진 등과 연계해 청사 위치를 기존 국도 5호선 인접지역에서 행정복합타운 예정지 중심부로 이동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도청사 신축은 우선적으로 건립되더라도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전체적인 조감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역시 청사 신축부지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행정복합타운 건설이라는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복합타운의 규모도 조정되어야 하고 토지 보상비, 건축비를 포함한 신축 비용 또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시간적 범위가 2022년 ~ 2026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축비 산정시 인상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인접해 있는 다원과 학곡 도시개발지구와 연계 발전도 고려해야 하고, 행정복합타운에 어떤 시설들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기관들의 이견으로 도청 신축에 따른 연계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개발지역을 구획하는 과정에서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개발 인접 지역의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을 방지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지나친 제한으로 주거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주변지역이 공동화되는 것도 예방해야 한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준으로 상위계획 및 계획지구 내 관련 계획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적절해보임. 도청사 신축부지인 고은리 373번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환경영향평가등이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인 입지의 타당성은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 경제환경과의 안정성은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되, 미래의 변화와 영향, 지속가능성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인근 대량산의 군사기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 토지이용 구상안

○ 2안 찬성

3. 대안

○ 의견 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 심의결과 통보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총괄 의견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구 주변 육수동물상 조사는 북쪽 소하천 등 포함되도록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다수의 비닐하우스 및 공장건물 등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개연성을 평가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3. 12. 4.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위원 김상진

김상진
위원

김OO 위원

최OO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위원

2023. 11. 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동식물상, 경관 측면에서 과도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항목 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동식물상

- 대상지 내외 법정보호종 분포 현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수환경

- 공공기관시설 조성으로 인해 생활용수와 오수 발생이 예상되는바, 공급·처리량, 여유용량 등을 조사하고,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경관

- 대상지 주변 기상 시가지, 마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산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2023. 12 . .

심의위원 : 이 영 개 

- 1 -

이OO 위원

-

4.2.2 심의의견 반영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에 따른 반영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4.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안OO 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 및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3-72호, '23.4.13)」 등의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3-72호, '23.4.13)」을 준수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
	<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의견 없음	-	-
정OO 위 원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 본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 입지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검토 자료를 충실히 작성·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입지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검토 자료를 충실히 작성·제시하도록 하겠음.	-
	○ 동 계획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조성계획 수립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 등에 따라 작성	○ 동 계획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3-72호, '23.4.13)」을 준수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
	○ 사업시행 시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예측·평가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등 검토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	○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등 검토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시하겠음.	-
	- 계획지구 인근의 타 개발계획 수립 여부를 파악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누적 환경영향 여부를 검토·예측	○ 계획지구 주변에 타 개발계획 수립여부를 파악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누적·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정00 위 원	<p>□ 항목별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계획부지 주변의 지형, 수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작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범위의 설정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p>	<p>○ 계획부지 주변의 지형, 수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작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범위의 설정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겠습니다.</p>	-
	<p>- 계획 부지 주변의 운영 및 개발(예정) 사업 등을 포함한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항목별 누적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제시</p> <p>※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참고</p>	<p>○ 계획지구 주변에 진행예정 및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조사하고, 사업 시행 시 누적영향을 실시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p>	-
	<p>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p> <p>○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p>	<p>○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습니다.</p>	-
	<p>○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p>	-
	<p>-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전지역과 보전축 등의 환경보전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상충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저감 및 대안을 고려하여 최적인 선정</p>	<p>○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전지역과 보전축 등의 환경보전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상충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저감 및 대안을 고려하여 최적인을 선정하겠습니다.</p>	-
	<p>- 생태자연도 등 자연생태, 산지경사도, 보전산지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구 양호한 식생(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이상)과 자연지형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한 생태축(능선축, 소능선축, 산간계류 등) 확보 방안 마련</p>	<p>○ 생태자연도 등 자연생태, 산지경사도, 보전산지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구 양호한 식생(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이상)과 자연지형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한 생태축(능선축, 소능선축, 산간계류 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p>	-
	<p>- 사업지구 경계지역은 인접한 지역의 자연생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보전녹지의 충분한 확보방안 마련 및 보전녹지와 기타녹지를 명확히 구분</p>	<p>○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는 분포하지 않으며, 경계부에 충분한 조경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p>	-
	<p>- 계획지구와 인접한 도로, 정온시설 및 하천 등에서의 경관영향, 생활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 방안 강구</p>	<p>○ 계획지구와 인접한 도로, 정온시설 및 하천 등에서의 경관영향, 생활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습니다.</p>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정00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에 대한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의 종류는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비교, 입지 및 토지이용 2개를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안의 선정사유를 명시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고,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은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등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 및 방법을 설정, 문헌 및 현지조사 범위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상은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등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문헌 및 현지조사 범위를 구하여 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의 종별 활동·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동·식물 분야의 면밀한 조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의 종별 활동·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 8월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내외 환경민감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구지정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내외 환경민감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구지정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16.7, 환경부)」에 따라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 생태면적률 산정·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면적률 적용지침(‘16.7, 환경부)」에 따라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과 계획수립 후 생태면적률을 산정하여 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 하천수질보전(국가지방하천 등),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원(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 하천수질보전(국가지방하천 등),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음.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정00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용수확보 현황을 반영하여 지하수 등 추가 수원을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향조사를 별도 항목으로 지정하여 적정 용수공급 방안(지하수 대체용수 확보 등)을 수립.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수는 춘천시와 협의하여 지방상수도를 통해 공급할 계획임(춘천시와 협의문서를 첨부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시설을 조사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인근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 검토와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대책(친환경적 에너지 사용 등) 수립.제시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15.12.9.)」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 검토와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대책(친환경적 에너지 사용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지형 훼손,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경관 훼손여부 검토 및 이에 따른 보전방안을 강구.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경관변화 여부를 검토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건축물 및 조성녹지 등이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예규 제726호, '23.4.3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건축물 및 조성녹지 등으로 주변 자연경관 변화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저감방안 강구 전·후 비교하여 제시하되,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저감방안 강구 전·후 비교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저감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기술하고 저감방안 선정사유를 제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식생 등 생육이 양호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을 고려하여 8월(동식물상), 9월(측정)에 실시하였으며,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은 평가서에 수록하도록 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사업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신 자료(최대 10년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자료는 사업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최근 10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음.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정00 위 원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시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시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음.	-
	- 주민설명회 시 도표, 인포그래픽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이 적은 일반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주민설명회 시 설명회 자료는 도표,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음.	-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 마을회관 등에 공지하도록 하겠음.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과정에서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평가항목, 범위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재차 심의 검토하여야 함.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과정에서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평가항목, 범위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재실시하도록 하겠음.	-
이00 위 원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본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행되는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으로 계획 수립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의 상징성, 효용성 등을 고려하되, 친환경적 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의 상징성, 효용성 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 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적정함	-	
	2. 토지이용 구상안 ○토지이용 대안 수립 시에는 다양한 토지이용 계획(대안) 수립을 통해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함.	○토지이용계획은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립하겠음.	
	3. 대안 ○대안 수립 시 기존 입지 비교 자료가 있을 경우 입지 비교 대안 추가 시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입지 비교 대안에 대한 대안비교는 실시하지 않음.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이00 위 원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적정함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적정함	-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없음	-	-
한00 위 원	□ 총괄의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용도지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계획지구 및 주변에 대한 자연생태,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음. ○계획 수립으로 인해 계획지구 및 주변에 대해 자연생태,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설정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3. 대안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의 설정·분석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의 선정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 입지 및 토지이용을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의 선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한OO 위 원	<p>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p> <p>○사업계획 수립 시 주차장, 시설지 등에 저영향개발기법(투수성 포장 등) 확대등 생태면적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함.</p>	<p>○사업계획 수립 시 주차장, 시설지 등에 저영향개발기법(투수성 포장 등) 확대등 생태면적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p>	-
	<p>○본 대상구역 경계로부터 북측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생태자연도 1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2등급이 수나무군락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자연상태환경 분야 중 식물상·식생에 대한 현지조사 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하여 조사범위에 포함하여야 함.</p>	<p>○대상구역 북측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해 식생 및 식물상 조사를 조사범위에 포함하겠음.</p>	-
	<p>○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현지조사 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환경현황 조사방법을 따라 실시하여야 함.</p>	<p>○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현지조사 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환경현황 조사방법을 따라 실시하였음.</p>	-
	<p>○부지 조성 등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 부지 및 인근의 정온시설에 대하여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민원발생 예상을 중점검토 대상으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p>	<p>○부지 조성 등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 대상 부지 및 인근의 정온시설에 대하여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민원발생 예상을 중점검토 대상으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p>	-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주민들이 초안 공람 및 설명회(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이 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p>	<p>○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는 신문공고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춘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주변 마을회관 등에 고지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음.</p>	-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 2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전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첨부하여 춘천시 환경정책과로 지역개발부하량 할당협의 요청(문서)을 하여야 함.</p> <p>※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 28조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의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승인) 이후에 사업추진 가능</p>	<p>○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하여 춘천시 환경정책과와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p>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박OO 위 원	□ 총괄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의견없음	○ 평가항목·범위는 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겠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
	3. 대안 ○ 의견없음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 생략 무방	○ 관련 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겠음.	-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	-
김OO 위 원	□ 총괄의견 ○ 도청사 신축부지가 당초에 결정되었던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433번지 일원에서 373번지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가 국도우회도로 추진 등과 연계해 청사 위치를 기존 국도 5호선 인접지역에서 행정복합타운 예정지 중심부로 이동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도청사 신축은 우선적으로 건립되더라도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전체적인 조감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 금회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부지에 대한 것이며, 행정복합타운 예정지에 대한 검토는 사업시행자가 상이하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 따라서,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사업 규모는 해당사업자가 계획수립을 실시한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역시 청사 신축부지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행정복합타운 건설이라는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복합타운의 규모도 조정되어야 하고 토지 보상비, 건축비를 포함한 신축 비용 또한 정확한 재산정이 필요하다. 시간적 범위가 2022년 ~2026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축비 산정시 인상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사업 규모는 해당사업자가 계획수립을 실시한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부지를 제외한 행정복합타운 예정지에 관한 토지보상비, 건축비 등에 관한 사항은 금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김OO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해 있는 다원과 학곡 도시개발지구와 연계 발전도 고려해야 하고, 행정복합타운에 어떤 시설들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기관들의 이천으로 도청 신축에 따른 연계효과와 시너지효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개발지역을 구획하는 과정에서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개발인접지역의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을 방지하는 지해도 필요하다. 지나친 제한으로 주거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주변지역이 공동화 되는 것도 예방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구상은 해당 사업자가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해당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p>□ 항목별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준으로 상위계획 및 계획지구 내 관련 계획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적정해보임. 도청사 신축부지인 고은리 373번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인 입지의 타당성은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안정성은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되, 미래의 변화와 영향, 지속가능성과 한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인근 대룡산의 군사기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주변의 도시계획 발전에 대한 사항은 추후 검토를 통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안정성 등 입지의 타당성은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청사 운영 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예측도 실시하도록 하겠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대상지는 군사시설 보호를 요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안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 구상은 2안으로 채택하겠음. 	-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김OO 위 원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평가 항목 선정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 요소와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기존의 도청 대신에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려하기 바람. 예를 들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주차시설을 비롯한 주변의 교통환경, 에너지 비효율성 등은 개선 되어야 할 것임.</p>	<p>○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 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해 검토하겠음.</p>	-
	<p>○환경에 대하여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조건과 양식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건물도 100년이상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신축하고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 친인간성이 구현되어야 함.</p>	<p>○건축계획은 100년 이상 거시적 안목 측면에서 신축하고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 친인간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수립하겠음.</p>	-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춘천시민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의견 수렴의 방법에 대해서도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고려할 필요, 예를 들어 신청사부지로 편입되어 토지가 몰수 보상되는 주민과 신축으로 재산가치가 증식되는 인근 주민의 이해가치가 서로 달라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람.</p>	<p>○주민의견 수렴은 주민 뿐 아니라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춘천시민, 강원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p> <p>○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계획은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토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p>	-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위주로 작성)</p> <p>○도청 신축의 문제는 입지는 이미 결정되었고 발표되었다. 그것에 대한 재론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부지 선정만 이루어졌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도청사 신축에 대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는 뜻도 된다. 도청 신축부지가 정해지고 도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한다.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실제 신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예산을 포함해 공사규모도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p>	<p>○도청 신청사는 행정절차에 따라 건립하도록 할 것이며, 토지보상 등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임.</p>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김00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모든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도민들과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은리 373번지 일대 100,758.00㎡의 면적에 도청사를 신축하는 일은 예고한대로 행정복합타운으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난개발, 부동산 투기도 막아야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청사 주변의 행정복합타운은 장기적은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해당사업자가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00 위 원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습니다. 	-
	<p>□ 항목별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주변 육수동물상 조사는 복측 소하천 등 포함되도록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육수동물상 조사는 인접하여 위치한 소하천을 포함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	-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	-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내 다수의 비닐하우스 및 공장건물 등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개연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 및 공장건물 등은 현재 사유재산이므로, 추후 착공 전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시설물 분포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	-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없음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반영계획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이00 위 원	□ 총괄의견 ○ 동식물상, 경관 측면에서 과도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동·식물상과 경관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
	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	-
	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 대상지 내외 법정보호종 분포 현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법정보호종 분포현황을 조사·평가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
	○ 수환경 - 공공기관시설 조성으로 인해 생활용수와 오수 발생이 예상되는바, 공급·처리량, 여유용량 등을 조사하고,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 시 생활용수 공급, 생활오수처리는 춘천시 지방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량을 조사하고, 운영 시기에 맞추어 공급될 수 있도록 춘천시와 협의하여 수용하도록 하겠음.	-
	○ 경관 - 대상지 주변 기성 시가지, 마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산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측을 통해 주요 경관자원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

